

## 오산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지정 설치·운영 조례

제정 2005년 4월 25일 조례 제831호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오산시에서 운영·관리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·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장애인”이라 함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.
2. “공연장 등”이라 함은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·집회장·관람장 및 체육관·운동장 중 시가 관리·운영(위탁운영을 포함한다)하는 시설을 말한다.
3. “최적관람석”이라 함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.
4. “장애인보호자”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.

**제3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**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**제4조(최적관람석의 설치)** ①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 수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·융자심사와 설계 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 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이동편의시설 확충)**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)**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최적관

## 오산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지정 설치·운영 조례

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.

**제7조(비용의 보조)** 시의 시설로서 위탁관리하거나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·운영하는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**제8조(민간운영시설의 권장)**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.

### 부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기존시설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운영중인 공연장 등은 조례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.